

---

#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

---



총무관리처 안전환경팀

#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

총무관리처 안전환경팀

## 1 업무 개요

### □ 관련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(관리감독자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
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(이하 '안전보건규칙')

### □ 업무개요

-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'법')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함

###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(법 시행령 제15조)

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<개정 2021. 11. 19.>

1.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이하 "관리감독자"라 한다)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"해당작업"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3.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.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5.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  - 가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(이하 "안전관리자"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(이하 "안전관리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
  - 나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(이하 "보건관리자"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(이하 "보건관리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
  - 다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(이하 "안전보건관리담당자"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
  - 라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(이하 "산업보건의"라 한다)
6.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
  - 가.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
  - 나.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7.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반기에 1회씩 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평가·관리 받음

## 2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
### □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

-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방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예초기,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금속절단기, 지게차, 포장기계에는 규정된 방호장치의 설치 외에 다음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한다.

#### 방호조치(법 시행규칙 제98조)

제98조(방호조치)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: 날접촉 예방장치
2.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: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
3.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: 압력방출장치
4.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: 날접촉 예방장치
5.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: 헤드 가드, 백레스트(backrest), 전조등, 후미등, 안전벨트
6.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: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

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.

1.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
2.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
3. 회전기계의 물림점(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)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※ 법 시행규칙 제98조 외에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현업업무종사자가 실제로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, 기구, 설비, 장비를 포함하여 안전·보건 점검을 해야 합니다.

### □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에 있어서의 점검 및 조치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

- 관리감독자는 규칙 별표2의 20종의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별표2의 직무수행 내용에 따라 점검하고 조치한다.
-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·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)는 규칙 별표3의 18종의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안전보건규칙 별표3의 점검내용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. 사업주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####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(안전보건규칙 제35조)

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)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·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, 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② 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□ 점검과 관련된 안전·보건 조치

- 안전보건규칙은 안전·보건점검 시 사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, 점검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

우,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 할 사항, 점검 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기계·기구 또는 설비별, 작업내용별로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을 규정하고 있다.

## 관리감독자의 점검과 관련된 안전·보건 조치(안전보건규칙 제57조 외)

제57조(비계 등의 조립·해체 및 변경)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·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
  2. 조립·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·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
  3. 조립·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
  4.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
  5. 비계재료의 연결·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  6. 재료·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
-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.

제295조(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)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·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
2.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
3. 밸브·콰크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
4.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
5.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,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
6.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7.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
8.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,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
9.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

제339조(토석붕괴 위험 방지)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·균열의 유무, 함수(含水)·용수(湧水)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제341조(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) ① 사업주는 매설물·조적벽·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제549조(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)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·손전등, 이산화탄소 등 유해 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5.>

제638조(사후조치)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, 보호구 지급,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5. 28.]



□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
-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·지도 해야한다.

**방호장치 등 사용의 제한(안전보건규칙 제36조)**

제36조(사용의 제한) 사업주는 법 제80조·제81조에 따른 방호장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,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 12. 26., 2021. 5. 28.>

**4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처치**

□ 산업재해에 관한 발생 보고

①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

-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
- (병원 긴급 후송) 환자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, 병원 등 연락하여 긴급후송
- (보고 및 현장)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, 사고원인 등 조사 종결 시 까지 현장 보존

② 산업재해 발생 보고

산업재해	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가스, 원재료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→ 발생한 날로부터 <b>1개월 이내</b> 산업재해조사표를 광주시 노동청 제출
중대재해	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,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,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→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, 팩스,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<b>지체없이</b> 보고. 단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(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의 중요한 사항 포함)

③ 산업재해 기록·보존

- 산업재해 사실 기록 및 보존 사항(3년간 보존)
  -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
  -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
  -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
  -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

④ 재해 재발방지계획의 수립

-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의 일반적 순서

① 단계	▶ 사실의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</li> <li>• 물적·인적·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</li> </ul>
↓		
② 단계	▶ 재해요인의 파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적·인적·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</li> </ul>
↓		
③ 단계	▶ 재해요인의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</li> </ul>
↓		
④ 단계	▶ 계획(대책)의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발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</li> </ul>

-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·인적·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

## □ 응급조치

- 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관리 요령 게시 시에는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-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해당되는 유해물질, 설비 등에 대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작성·게시·배포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.

###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작성 대상(안전보건규칙 제436조 외)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436조)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게시사항(안전보건규칙 제442조)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홍보사항(안전보건규칙 제449조)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및 사용 관련 홍보사항(안전보건규칙 제460조)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및 사용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462조)
- 베릴륨의 제조·사용 작업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476조)
- 석면의 제조·사용 작업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482조)
- 방사선 업무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575조)
- 밀폐공간 작업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641조)
-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, 개·보수 작업 관련(안전보건규칙 제655조)

## 5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
### □ 작업장 정리·정돈에 대한 확인·감독

- 정리·정돈은 작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잘 배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보관하거나 폐기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.
- 정리·정돈의 원칙은 작업장에서 모두가 이행하여야 하는 개념이며, 상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개념이다.

### □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
-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, 상시 안전한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.

###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(안전보건규칙 제11조 외)

- 작업장의 출입구(안전보건규칙 제11조)
-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(안전보건규칙 제12조)
-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(안전보건규칙 제13조)
-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( 안전보건규칙 제14조)
- 비상구의 설치(안전보건규칙 제17조)
- 비상구 등의 유지(안전보건규칙 제18조)
- 통로의 조명(안전보건규칙 제21조)
- 통로의 설치(안전보건규칙 제22조)
- 가설통로의 구조(안전보건규칙 제23조)
-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(안전보건규칙 제24조)
-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(안전보건규칙 제25조)
- 계단(안전보건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)

## 6 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조언에 대한 협조

### □ 관리감독자의 성실 의무

- 법 제20조(안전관리자 등의 지도·조언)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언하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.

###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·조언(법 제20조)

제20조(안전관리자 등의 지도·조언) 사업주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안전관리자
2. 보건관리자
3. 안전보건관리담당자
4.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(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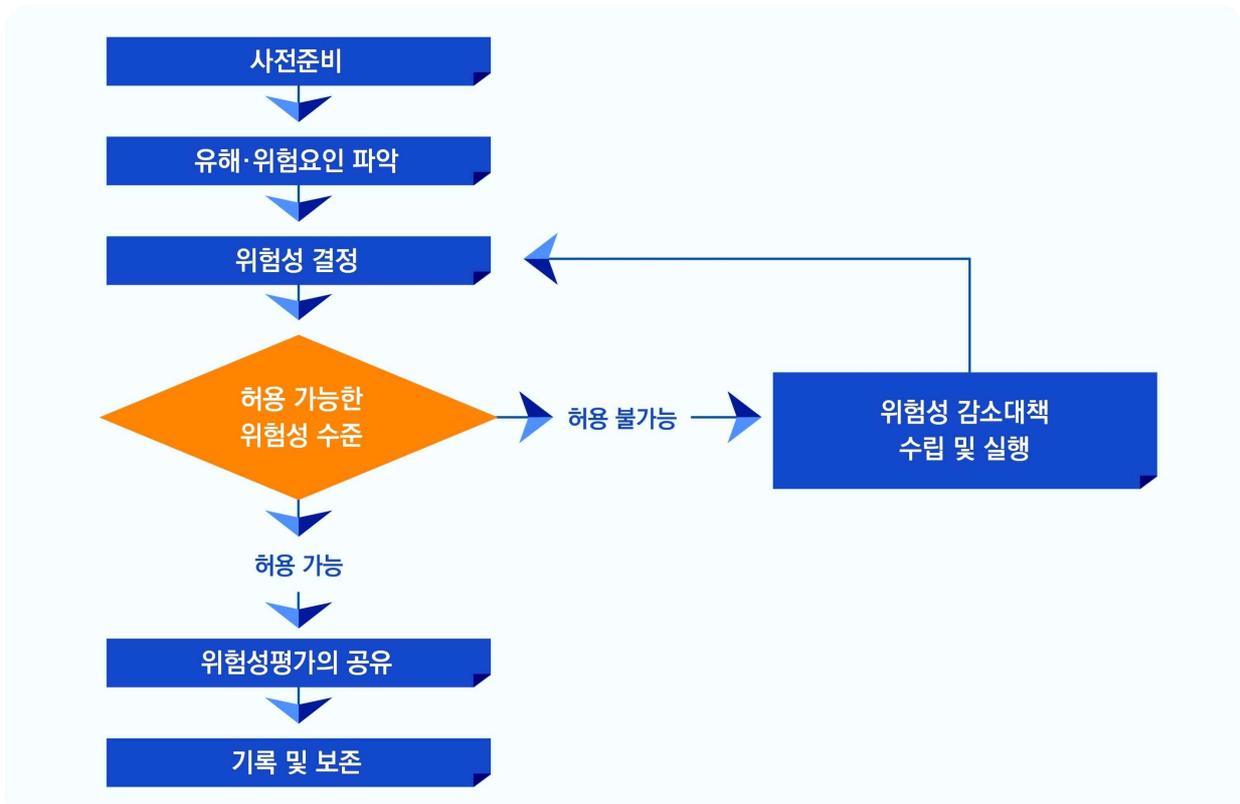
## 7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

### □ 위험성평가란?

- 법 제36조에 의거 대학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.

### □ 위험성평가의 절차

- 안전환경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협조하고, 개선조치를 시행한다.



단계  
01

### 사전준비

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,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,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

단계  
02

###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단계  
03

### 위험성 결정

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

※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단계 판단법,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

단계  
04

###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

단계  
05

### 위험성평가의 공유

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,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,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

단계  
06

### 기록 및 보존

위험성평가의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

## 8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
### □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

-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.

###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(안전보건규칙 제35조 외)

-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(안전보건규칙 제35조)
- 사용의 제한(안전보건규칙 제36조)
- 약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(안전보건규칙 제37조)
-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(안전보건규칙 제39조)
- 작업지휘자의 지정(안전보건규칙 제39조)
- 신호(안전보건규칙 제40조)
- 운전위치의 이탈금지(안전보건규칙 제41조)